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11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38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사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당해 직급에서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다음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1. 일반직 3급 : 7년 이상
2. 일반직 4급부터 7급까지 : 4년 이상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대우직원의 선발)</p> <p>사장은 <u>4급 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</u> 승진 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다음 상위직 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.</p>	<p>제30조(대우직원의 선발)</p> <p>----- <u>다음 각호에 따라 당해 직급에서 근무하고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일반직 3급: 7년 이상</u></p> <p>2. <u>일반직 4급부터 7급까지: 4년 이상</u></p>

관계법령

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
제7장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

- 제54조(대우공무원 재직요건)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.
1. 2급부터 5급까지 : 7년 이상
 2. 6급부터 9급까지 : 4년 이상
 3. 연구사 및 지도사 : 9년 이상